Sunshine GWANGYANG

광 양 시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시 보

제44호 2026. 11. 4.(수)

입법예고

광양시 공고 제2026-2300호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····· 1

고 시

광양시 고시 제2026-281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····· 8
광양시 고시 제2026-28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····· 10
광양시 고시 제2026-287호 광양국가산업단지(광양 힐링 수변길 조성사업) 개발실시계획 승인 고시 ····· 11

공 고

광양시 공고 제2026-2302호 소하천등 정비(소하천, 소하천구역, 소하천시설의 점용·사용) 허가 고시(공고) ····· 15

회람										

▶ 발행 : 광양시 ▶ 편집 : 홍보소통실 (☎797-2713, 행정2713)

광양시 공고 제2026-2300호

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

「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」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
2026년 10월 일

광 양 시 장

1. **조 례 명**: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

2. **폐지이유**

○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사업은 2010년도에 지식경제부 지역특성화산업육성사업 선정되어 2012. 12. 31.일 자로 사업이 종료되었기에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.

3. **주요내용**

○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

4. **입법예고**

○ 예고기간: 2026. 10. 29. ~ 11. 18.(20일간)

○ 예고방법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
5. **폐지 조례안: 별첨**

6. 의견제출

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(참조: 철강항만과 제철항만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: 서면(직접방문), 팩스, 우편, 전자우편

라. 의견제출할 곳

- 주　　소: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410, 철강항만과 (우 57777)
- 전　　화: 061-797-3428
- 팩　　스: 061-797-2587
- 전자우편: song5062@korea.kr

※ 우편(전자우편) 제출 시 의견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

붙임 1. 의견서 제출서식 1부.

2. 조례 폐지안 1부.

3. 현행 조례 1부.

붙임 1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**조 례 명: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**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　　소 :

○ 연　락　처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　　견	비 고
	찬　성	반　대		

붙임 2

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

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붙임 3

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

(제정) 2010.11.24 조례 제1040호
(일부개정) 2011.10.26 조례 제1105호 다른 조례의 개정(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조례 부칙 제2조)에 따른 개정
(일부개정) 2014.12.31 조례 제1304호 다른 조례의 개정(광양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)
(일부개정) 2026.08.12 조례 제2319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제1항 및 제3항, 같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역경쟁력 강화사업의 하나로 일반 산업용 및 건설용 원부자재의 안정적 수급과 공정한 거래를 지원하는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를 설립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립 및 운영) ①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(이하 “원부자재센터”라 한다)는 「국세기본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설립한다.

② 원부자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하며 정관 및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조(이사회) ① 원부자재센터는 사업계획 및 예산, 결산, 조직·기구, 정관의 제·개정 등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는 이사회를 둔다.

② 원부자재센터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.

③ 이사장은 광양시장을 제외한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호선한다.

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당연직 이사는 광양시장,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,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한다.

⑤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의 직무와 임면,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⑥ 이사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양시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.

제4조(사업) ① 원부자재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각종 원부자재의 거래, 임치, 중개, 등록, 감정 등
2. 거래상의 애로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 및 각종 지원사업
3. 원부자재에 관련된 각종 정보화 사업

4. 정부기관, 지자체 등의 위임·위탁사업
5. 원부자재 관련 인증 사업
6. 기타 원부자재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에 부합되는 사업

② 원부자재센터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적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.

③ 원부자재센터는 특정단체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.

④ 원부자재센터는 제1항에 규정된 사업 이외에도 원부자재센터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5조(조직) ① 원부자재센터는 제4조 제1항의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20명 내외의 인원으로 실무부서를 구성·운영한다.

② 실무부서의 구성과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6조(정관) 원부자재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명칭
2. 목적
3. 사무소의 소재지
4. 사업에 관한 사항
5.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. 이사의 종류 및 정수, 임기, 임면에 관한 사항
7.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8. 실무조직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
9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10. 해산에 관한 사항
11. 기타 원부자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
제7조(재산의 조성) ① 원부자재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중앙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
2. 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
3.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
4. 기타 수익금

② 광양시는 제4조제1항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원부자재센터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재원 중 보조금에 대하여는 「광양시 지방

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의거해 교부를 요청하고 정산하여야 한다.

제8조(보고 및 검사 등) ① 센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광양시장에게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
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 1부
2.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수지결산서 1부
3.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

② 시장은 원부자재센터의 업무·회계·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 또는 보조한 재산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출연 또는 보조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제정 전에 설립된 광양 국제 원부자재수급 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시 예산 지원조건)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시 예산 지원은 중앙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지원에 대응 지원하여야 한다.

광양시 고시 제2026 - 281호

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

광양시 성황1지구 성황동 산68번지 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10월 30일

광 양 시 장

1. 사업의 명칭

○ 광양 성황1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
[(주)윈랜드컴퍼니]

2. 사업주체

○ 주소 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장로 70 20*동 ****호

○ 상호명 및 대표자 : ㈜윈랜드컴퍼니 대표 손○○

3. 사업위치

○ 전라남도 광양시 성황1지구 성황동 산 68번지 일원

○ 사업부지면적(대지면적) : 32,603㎡

4. 건설주택의 규모

○ 건축면적 : 5,220.8965㎡

○ 연 면 적 : 111,285,6541㎡

○ 공급세대수 : 641세대

○ 공급형별 : 84㎡A(290), 84㎡B(183), 84㎡C(40),
124㎡A(74), 124㎡B(52), 194㎡A(2)

○ 공급방식 : 민간분양

5. 사업기간 : 2027. 2월 ~ 2030. 2월

6. 「주택법」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

○ 「건축법」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등 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인한 기타 관계법률 상 인·허가

7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건축과(☎061-797-347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광양시 고시 제2026-286호

하천점용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11월 2일

광 양 시 장

가. 허가내용

하천의 명칭		광양서천(지방하천)
점용자	주소	광양시 중마로 410(마동) 5층, 교육청소년과
	성명	광양시청(교육청소년과장)
점용지역	위치	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628번지 외 3필지 일원
	면적	약 4,270㎡
점용목적		토지의 점용
점용내용		2026년 제19회 광양시 푸른성장 청소년 대축제 추진
점용기간		당초 : 2026. 10. 23. ~ 2026. 10. 24.(2일간) 변경 : 2026. 11. 14. ~ 2026. 11. 15.(2일간)

나. 관계도서는 광양시청(건설과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건설과(☎061-797-273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광양시 고시 제2026 - 287호

광양국가산업단지(광양 힐링 수변길 조성사업) 개발실시계획 승인 고시

광양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, 같은 법 제19조의2 제1항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11월 4일

광 양 시 장

1. 사업의 명칭

○ 광양 힐링 수변길 조성사업

2. 사업시행자의 성명

○ 성 명: 광양시장

○ 주 소: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(중동)

3. 사업의 목적 및 개요

○ 광양시 금호동 일원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인접한 주거 밀집 지역으로, 주민들의 일상적 휴식 공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에 따라

○ 지역민을 비롯한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유도할 수 있는 힐링 수변길을 조성하고자 함

4.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

○ 위 치 : 광양시 금호동 836번지 일원

○ 면 적 : 도시계획시설(도로) A=6,275㎡

5. 사업의 시행 방법 및 시행 기간

○ 시행 방법: 실수요자 개발

○ 사업 기간: 2026. 12. ~ 2027. 12.

6. 도시·군 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사항 - 도면 게재 생략

가. 교통시설

(1)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(m)	기 점	종 점	사용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 정 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1	중로	2	146	18	국지도로	1,711	금호동 625-1	금호동 810	일반도로	-	2018. 12. 5	
2	소로	2	650	8	특수도로	289	금호동 836	금호동 810	일반도로	-	2018. 12. 5	
3	소로	3	684	6	특수도로	2,174	금호동 810	금호동 810	일반도로	-	2018. 12. 5.	

7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대한 사항 - 도면 게재 생략

가)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○ 종 류 : 광양 도시계획시설(도로) 사업

○ 명 칭 : 광양 힐링 수변길 조성사업

나)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

○ 면 적 : 도시계획시설(도로) A=6,275㎡

○ 규 모

구분	부지면적(㎡)	구성비(%)	비고
계	6,275	100	
도 로	6,275.0	100.0	

다) 사업 기간: 2026. 12. ~ 2027. 12.

라)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

일련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㎡)		소 유 자		이해관계인			비고
				지적	편입	성 명	주 소	성 명	주 소	권리여부	
합계				30,895.4	6,275						
1	금호동	625-1	도	1,840.5	219.0	동광양시					
2	금호동	836	도	19,288.0	5,626.0	동광양시					
3	금호동	676-1	도	541.4	69.0	동광양시					
4	금호동	672-1	도	326.8	13.0	동광양시					
5	금호동	810	도	8,898.7	348.0	국(건설교통부)					

8. 승인조건 : 조건부 승인사항 이행 추진(별첨)

9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는 광양시청 산단택지과(☎061-797-2932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광양 힐링 수변길 조성사업

개발실시계획인가 조건

1. 본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(부서)의 협의 의견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사업 추진 중 협의 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(예측)하였을 경우에 협의부서(기관)와 변경협의 등을 조치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.
2. 본 사업 시행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
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 외의 일체의 계획 변경은 사전에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.
4.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경계표시(깃발, 말목 등)를 하여야 하며, 사업계획 구역 밖을 침범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.
5. 실시계획인가 사업 완료 시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. 준공인가 시 공사완료 보고서(준공조서, 설계도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)를 제출하여야 하며, 다른 법령에 따른 준공검사,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그 내용(관련서류)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6.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인가조건, 감독처분, 행정사항 미 이행 시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에 따라 공사의 중지, 원상복구, 실시계획인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.
7. 본 사업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문제(민원, 피해, 재해 등)는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해결(보상 등)하여야 합니다.

■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[별지 제12호서식] <개정 2016. 9. 8.>

소하천등 정비[소하천, 소하천구역, 소하천시설의 점용·사용] 허가 고시[공고]

공고 제2026-2302호

「소하천정비법」 제10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(「소하천정비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(소하천,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·사용)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4일

광 양 시 장

시행자 (점용·사용자)	상호 및 명칭	한국전력공사 광양지사			
	대표자 (성 명)	한국전력공사 광양지사	주소	광양시 중동로 20	
소하천명		선동1소하천			
공사 (점용·사용) 개요	위치	옥룡면 동곡리 1205-8 번지 일원 (425, 423 인근)			
	면적	0.452㎡	폐천부지(廢川敷地) 예상 면적		㎡
	기간	2026. 10. 28. ~ 2031. 12. 31.			
	목적 및 사유	공작물 설치(전신주 2본 설치)			

열람서류

1. 실시설계도서
2. 위치도(축척 5만분의 1 지형도)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